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책임자	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김기한(02-2100-2630)	담당자	김영근 사무관 (02-2100-2642)	

제 목 :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」 국무회의 의결

- 공정경제의 핵심과제인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」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'21년 3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.**
- 법이 지향하는 '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'를 적극 구현해나갈 것입니다**

1. 개요

- 금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3.5일 국회를 통과한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」(이하, 금융소비자보호법)을 의결하였습니다.
- 의결된 법률은 3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되는 '21년 3월 중에 시행됩니다.
- * 다만, '금융상품자문업' 및 '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'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시행

2.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

-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로서,
-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.

① 약탈적 대출,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시스템이 촘촘해지고, 행정조치는 강화됩니다.

① 개별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**6대 판매규제***가 **모든 금융상품에**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보호 공백이 해소됩니다.

*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 금지, 부당권유행위 금지, 광고규제

②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 **징벌적 과징금*** 등 강한 제재가 부과되며,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**판매금지명령도** 가능해집니다.

*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%까지 부과 가능

② 분쟁조정, 소송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.

①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하여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**①조정이탈금지제도, ②소송중지제도**가 도입됩니다.

① 소액분쟁(2천만원 이하)은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소 금지

② 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사건이 소로 제기된 경우 소송중지 가능

②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**①손해배상 입증책임**을 전환하고, 소비자의 **②자료요구권**을 보장합니다.

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시 판매자는 위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

② 분쟁조정·소송 관련 금융회사에 자료열람 요구 →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

③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,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됩니다.

①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기간 내 **청약철회권*** 행사가 가능하며, 판매규제 위반 시 **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**할 수 있습니다.

* 별도의 행사요건은 없으며, 청약철회 시 판매자는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

② **투자상품 위험등급** 등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되며, 그동안 시장 자율로 운영되던 **금융상품 비교공시**가 법제화됩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
--	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1 기능별 규제체계 마련

◇ ‘동일기능-동일규제’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및 판매업 등의 유형을 재분류

① (금융상품)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‘예금성·투자성·보장성·대출성’ 상품으로 분류(§3)

구 분	개 념	대 상(예시)
예금성	은행법상 예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	예·적금 등
투자성	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	펀드, 신탁 등
보장성	보험업법상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	생명보험, 손해보험 등
대출성	은행법상 대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	주택담보대출, 신용카드 등

② (금융상품판매업자등)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“직접판매업자, 판매대리·중개업자, 자문업자”로 분류(§4)

구 분	개 념	대 상(예시)
직접 판매업자	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(투자중개업자 포함)	은행, 보험사, 저축은행 등
판매 대리·중개업자	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중간에서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아 판매를 대리하는 자	투자권유대행인, 보험설계·중개사, 보험대리점, 카드·대출모집인 등
자문업자	금융소비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	투자자문업자

1. 6大 판매원칙* 확대 적용

* 적합성·적정성 확인 및 설명 의무 준수, 불공정영업행위·부당권유행위 및 허위·과장광고 금지

◇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6大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→ 소비자보호 공백 해소

① **(적합성 원칙)** 소비자의 재산상황, 금융상품 취득·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 (§17)

- 현재 금융투자상품·변액보험에 도입된 상태 →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(예금성 상품의 경우 수익률 등 변동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한정)

② **(적정성 원칙)**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*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·확인 (§18)

* 재산상황, 투자경험(투자성 상품), 신용 및 변제계획(대출성 상품) 등

- 현재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, 파생결합증권 등에 도입된 상태 → 대출성·보장성 상품으로 확대

③ **(설명 의무)**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 (§19)

- 금융상품 유형별로 필수 설명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, 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것을 의무화

※ 은행법·자본시장법·보험업법·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각각 규정된 설명의무를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통합·이관

④ **(불공정영업행위 금지)** 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(§20)

- 대출 후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, 개인대출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금지 등

< 불공정영업행위 유형 >

- ① 대출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
- ② 대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
- ③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
- ④ 연계·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·변경하는 행위 등

⑤ **(부당권유행위 금지)**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(§21)

< 부당권유행위 유형 >

- ①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
- ②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
- ③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
- ④ 객관적 근거 없이 금융상품을 비교하는 행위 등

⑥ **(허위·과장광고 금지)** 금융상품 또는 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등(§22)

< 필수 포함사항 >

- ①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
-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, 금융상품의 내용
- ③ 보장성 상품 :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 변경 가능 여부
- ④ 투자성 상품 : 운용실적이 미래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항 등

< 금지행위 >

- ① 보장성 상품 : 보장한도, 면책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
- ② 투자성 상품 :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
- ③ 대출성 상품 : 대출이자를 일단위로 표시하여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

2. 판매원칙 위반시 제재 강화

◇ 판매원칙 위반 관련 위법계약해지권,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

① **(위법계약해지권)**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일정 기간* 내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요구 가능(§47)

*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

○ 소비자의 해지요구에 대해 금융회사가 **정당한 사유**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**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가능**

② **(판매제한명령)**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 계약체결 제한·금지(§49)

○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**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**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

③ **(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)**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고의·과실 입증책임을 금융회사 등으로 전환(§44)

④ **(징벌적 과징금)** 주요 판매원칙* 위반 시 관련 수입 등의 50%까지 과징금 부과(§57)

*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·부당권유행위 금지, 허위·과장광고 금지

⑤ **(과태료)** 판매원칙 위반 시 1억원 이하* 또는 3천만원 이하**의 과태료 부과(§69)

*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 금지, 부당권유행위 금지, 광고규제 위반 등

** 적합성·적정성 원칙 미준수 등

3

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신설·도입

◇ 소비자 선택권 확대, 피해 방지, 사후구제 강화 등을 위한 제도 신설

① **(청약철회권)** 일정기간 내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·재화 등을 반환 (§46)

○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·대출성·투자성 상품 및 자문에 적용

* 현재 투자자문, 일부 보험상품에 적용 중

구분	유형별 숙려 기간
보장성	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
투자성·자문	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
대출성	계약서류 제공일,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·재화 등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

② **(사후구제 강화)** 금융회사의 소 제기*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방지 및 분쟁조정·소송 시 소비자의 정보접근 강화

* 현행 분쟁조정과정 중 소제기 시 조정절차 중지 → 금융회사는 불리한 결정이 예상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 발생

○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 도입 (§41)

○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*은 분쟁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 마련 (§42)

* 주장하는 권리·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

○ 소비자가 분쟁조정·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이 유지·관리하는 자료의 열람 요구 시, 이를 수용할 의무 (§28)

* 금융회사 등은 영업비밀 현저한 침해 등의 경우 거절·제한 가능

◇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금융상품 선택을 지원하고, 기존 제도의 공백·미흡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포함

① **(금융상품자문업 신설)** 상품 선택시 일반인들도 전문적·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 신설(§12)

○ 판매와 자문 간 겸영이 금지되는 독립자문업을 원칙(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는 예외)으로 하고,

○ 자문업자가 지켜야 할 소비자보호 원칙* 등을 규정

* 독립자문업자 여부 등 자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, 자문 금융상품의 범위,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자문 관련 재산상 이익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

② **(금융교육 강화)** 금융소비자 역량 제고를 통해,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강화(§30·31)

○ 그간 실무차원에서 운영된 금융교육협의회*의 법적근거 마련

* (구성) 금융위 부위원장(의장), 관계부처 고위공무원, 금감원 부원장 등
(역할) 금융교육 추진·평가·제도개선 사항을 심의·의결

○ 금융위에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,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(매 3년)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

③ **(직판업자의 관리 책임)** 직판업자에게 대리·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, 위반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, 손해배상 책임 부과

* 과태료 : 대리·중개업자의 재위탁 금지의무 위반시(1억원 이하)

과징금 : 대리·중개업자의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위반 시

** 다만, 직판업자가 대리·중개업자에 대해 적절한 주의·감독 시 면책

④ **(대출모집인 감독)** 그간 법상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출모집인*을 법상 감독 대상(판매대리·중개업자)으로 규정(§2·11)

* 현재 법적근거 없이 모범규준(금감원 행정지도)에 따라 등록 및 규율